

#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

## □ 중개업자 신분확인

- 부동산중개업자가「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」에 의하여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를 해당 시·군·구에 확인 합니다.
-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·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,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.
- 중개의뢰시에는 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고 진위여부를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□ 중개업자 및 중개거래 상대방 신분증 확인방법

- 육안확인 :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, 글자 등의 이상여부 확인
  - \* 육안확인 상세내용은 [www.minwon.go.kr](http://www.minwon.go.kr)의 주민등록 확인방법 참조
- ARS 확인 : ARS 1382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, 주민등록번호 오류, 말소 등을 확인
- 민원24([www.minwon.go.kr](http://www.minwon.go.kr)) : 민원24 사이트의 확인서비스→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
- 행정기관 단말기 : 각 읍·면·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(확인할 주민등록증 지참 필요)